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욱 의원입니다.

○ 최근 건축 설계의 다양화로 인해, 건축물대장상으로는 1개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형상으로는 2개 이상의 동으로 분리된 형태의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현행 조례는 실제 외형과 상관없이 건축물대장만을 기준으로 건물 상단의 벽면 이용 간판 수량을 일괄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분리된 각 동의 특성이 무시되어 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이 침해되고, 시민들의 건물 식별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구조가 2개 이상의 동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물에 대해 간판 설치 수량을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